

## 최근 입법 동향

#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글 / 방미경 법제처 법제지침단 법제관

### I. 입안배경

최근 독도 소재지인 경북지역 의원들이 독도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으며, 박명재 위원 등 19명이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역시 그 중 하나이다.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울릉도·독도 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 지역이다.

현재 독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이나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결국 그 범위가 제한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법률이라는 한계가 있어, 독도에 대한 개발,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기존 법률만으로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울릉도와 독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독도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울릉도·독도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위원들의 주도로 해양자원과 생태계 보호 등 여려 분야에 흘어져 있는 독도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현행 독도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울릉도·독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

릉도·독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여기에서는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전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

#### 1. 제정 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 지역인 울릉도·독도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울릉도·독도 지역의 개념 정의

“울릉도·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독도와 그 인근 해역으로 정의함.

#### 3.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종합계획

행정자치부장관은 울릉도·독도 지역 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4. 연도별 사업계획

경상북도지사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5. 재정지원 등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6. 사회기반시설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독도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수업료 지원·노후 주택 개량 지원·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7. 주민 생활지원 등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8. 어민 피해지원 등

다른 나라 국적 선박의 불법 조업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조업 손실 또는 어구 손괴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9. 울릉도·독도지원기금

울릉도·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함.

### III. 입법 전망

최근 독도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안들과 “일본 정부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반일감정에 입각한 즉흥적 법안 제출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만방에 공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된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생활, 소득, 복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고함으로써 나아가 국가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 시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재정지원 외에도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정주 및 생활을 위한 직접적인 복지지원 및 재정지원 등도 규정되어 있으며, 어민들에 대하여 조업 손실 등 피해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에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재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시행된다면 울릉도·독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되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인구유입이 되면서 아울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중단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들(독도입도지원센터, 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방파제 건설 등)의 신속한 추진 역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발의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영유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향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